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13243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운 담당변호사 최종원, 박세영, 나유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호준, 변호사 오수정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9. 7.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919,978원과 그 중 2,997,636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1%의, 2,643,549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4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470,5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3,470,5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금 합계액인 8,919,978원과 그 중 2,997,636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1%의, 2,643,549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4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9. 10.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3,470,564원과 책임재산 24,177,846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3,470,564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13,470,5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① 약 20년 전부터 피상속인인 망 D이 피고 C에게 농사일과 가족들의 생계에 대하여 의존하였고, 피고 C이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실제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농지를 매수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C이 딸기 등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출하하여 판매한 수입으로 그 동안 피상속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상속인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명백하고, ② 설령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은 피고 B의 채무상태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제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당한 기간 동안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피상속인인 망 D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 B의 상속지분까지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B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B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 B은 2012. 1. 12. 소의 주식회사 F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즈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F 회원가입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B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소의 G 주식회사는 2018. 2. 10. 위 F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및 납입안내 참조),

원고는 2018. 7. 16. 위 G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2, 3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1) F 및 G은 최초 2006. 1. 27.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F는 관련 채권을 G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후 위 B 을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9차 전100812), 2019. 11. 9.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비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B 은 원고에게 금 4,550,586원 및 그 중 금 2,784,018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피고 B 은 2011. 7. 20.경 소외 주식회사 H 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즈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갑 제5호증의 1 H 회원가입신청서 참조).

또한 위 B 은 위 카드를 사용하여 2017. 1. 25.경 금 40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갑 제5호증의 2 특수채권 원장조회(장기카드대출) 참조).

그런데 위 B 은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9. 8. 12. 위 H 의 B 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위 [B]은 위 양수금과 관련하여 금 8,919,978원 및 그 중 금 2,997,636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1%, 금 2,643,549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4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 7호증, 갑 제8호증 각 연체이자율표, 채권계산서 참조).

### (3) 소결

전술하였듯이 원고는 위 (1)항의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받았는 바,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2)항의 채권에 대해서만 양수금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2)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 (13,470,564원)입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B]의 아버지는 소의 [D]이었는데, 위 [D]은 2018. 10. 3. 사망하였고, 위 [B]은 위 [D]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위 [D]의 상속인들 및 [B]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9. 10. 24.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9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B의 재산인데, B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C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설정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B의 재산인데, B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C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B]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셨습니다.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C]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 및 2020. 12. 31.자 준비서면 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

다만, 위 준비서면 제1항 가.에 피고들이 모판계라고 기재부분은 오기로, 피고들은 형제자매관계임을 밝힙니다.

## 2 원상회복 방법의 변경

가. 2020. 12. 31.자 준비서면에서 밝힌바와 같이,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2019. 10. 23.)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I  조합)이 설정되었는바, 원고는 '가액반환'으로 청구하면서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갑 제9호증의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사실심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9. 11. 18.경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금 175,156,000원이고(갑 제13호증 감정평가표 참조),

I  조합의 2021. 1. 11.자 회신에 의하면, I  조합인 근저당권의 사해행위당시 피담보채무액은 18,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157,156,000원(175,156,000원 - 18,000,000원) 중 피고 B 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금 24,177,846원(157,156,000원 × 상속지분 2/13 ; 소수점이하 절사)이 위 부동산에서 피고 B 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이므로,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3,470,564원과 위 책임재산 24,177,846원 중 원고는 더 적은 금액인 13,470,56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손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와 같이,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대한 피고 B의 책임재산가 액만으로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는바,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은 손해행위취소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목록

1. 경상남도 김해시  대 496㎡

2. 경상남도 김해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정미소 136.82㎡

3. 경상남도 김해시  답 46㎡

4. 경상남도 김해시  답 2406㎡ 끝.

